

##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703 |
|------------|------|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☐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, 현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,
- ☐ 다만,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, 부

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 시행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
- 이에 따라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.
-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, ‘중요한 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, 공단 ‘이사장이 예산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’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-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, 서울추모공원, 장애인콜택시, 서울어린이대공원, 고척스카이돔, 공영주차장, 공공자전거 등 서울시의 복지·문화체육·도로교통·시설안전을 책임지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주요 산하기관입니다.
-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및 서울시설공단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